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 재무과장



분야별	건명	권고사항	처리결과	비고
세입	정기예금 예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 추이 및 3억 원 이상 사업비 등을 사전 파악하여 유휴자금 활용 세외 수입(이자창출) 극대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치된 정기예금의 해지가 44건에 달함</li> <li>· 만기 예상 이자액 대비 해지 이자액의 차액이 2025년 514백 만원에 달함</li> <li>· 신속 집행 등 적기 지출도 중요하지만,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예상 손실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세심한 관심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 3억원 이상 지출 사업비는 사전 파악 후 자금을 배정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li> <li>· 정기예금은 분할 예치하여 증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음</li> <li>· 유휴자금을 수시로 파악하여 자금 상황에 맞는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음</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문화체육과장 : 조 봉 근 

분야별	진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세출	세출 결산 누락  성과보고서 지표선정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문화이용권은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결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더욱 철저한 결산을 요함</li> <li>-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을 측정산식으로 하여 목표가 85%인데 실적이 94%로 되어 달성율이 111%로 되어 있음</li> <li>- 발급율은 무엇이 기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상인원에 대한 발급인원인 경우라면 목표를 100%로 하여야 합리적이라고 판단됨</li> <li>- 신청에 의하여 발급이 되는 것이라면 대상자중 신청이 누락된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대상자가 신청 못 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에 2026.3.19.자로 누락 대상자 발굴 및 카드발급 지원 안내 공문을 보내 대상자들의 카드발급을 독려, 사업 추진은 해당연도에 전라남도 문화재단에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 집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해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받음.</li> <li>-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측정 산식 목표가 85%로 설정한 이유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가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인데, 전남도 목표가 84%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함.</li> <li>- 2026년 현재 정부합동평가 기준, 전남도 사업 예산 집행률 목표치는 79.06%이므로 향후 성과지표수립 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2026.4.7.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담당자 인식 제고 및 이용(발급)률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카드발급 추진을 위해 강구하고 있음</li> </ul>	



# 고 흥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락대상자 발굴 및 카드발급 지원 안내

1. 관련: 도 문화예술과-3076(2026. 3. 18.)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문화누리카드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누락대상자 발굴 서비스(권리구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담당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2026. 4. 17.(금)까지 누락대상자 발굴 후 서비스 처리 내역을 행복e음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적

- 신규로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얻게 된 경우,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대상자가 다수 존재
- 이들에 대한 누락예방 복지서비스(권리구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행정 실현 및 발급·이용률 제고

나. 문화누리카드 누락대상자 권리구제서비스 개요

- 대상자 : 2026년도 발급대상에 해당되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자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6. 3. 10. 추출일 기준 33,030명)
- 진행절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된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정보를 확인 및 활용하여 누락대상자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발급지원(해당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만 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
2026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공 ('26.3.11.)	대상자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연락 및 카드발급 진행 (~ 11.30) ① 방문요청을 통한 발급 또는 ② 온라인 신청 안내 또는 ③ (재추진대상자일 경우) ARS 재추진 안내	서비스 처리 내역 행복e음에 입력 (신청안내 / 본인포기 / 처리중 / 처리완료 / 제외 등) * 처리 후 일주일 이내 입력 권장
사회보장정보원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진행기간 : 카드발급 기간인 2026.11.30.까지(해당 지역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유의 및 기타사항

-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대상자 정보는 2026.3.10. 기준으로 추출된 문화누리카드 미발급자 정보로, 해당 일자 이후 이미 발급한 대상자 혹은 수급자격이 탈락한 대상자 등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간 이력 조회를 통해 발급 현황 확인 후 진행

- 읍·면 담당자는 대상자 정보 확인 및 안내 시, 발급·이용이 용이한 대상자에게 우선 안내
- ※ 대상자에게 발급·이용 안내 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사회적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행복e음에 입력한 서비스 처리 내역 기준으로 연도 중반과 연도 말 권리구제 서비스 우수 업무 추진자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 예정

- 붙임 1.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 누락서비스 대상 지자체 제공현황 1부,  
 2. 통합문화이용권 누락서비스관리 매뉴얼 1부. 끝.

## 고 흥 군 수

수신자 고흥읍장, 도암읍장, 풍양면장, 도덕면장, 금산면장, 도화면장, 포두면장, 봉래면장, 동일면장, 점암면장, 영남면장, 괴역면장, 남양면장, 등강면장, 대서면장, 두원면장

전결 2026. 3. 19.

주무관                    김범규                    문화예술팀장                    김윤희                    문화체육과장                    조봉근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과-6589                    접수

우 59542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http://www.goheung.go.kr>

전화번호 061-830-6715                    팩스번호 061-830-5548                    / [kg909@korea.kr](mailto:kg909@korea.kr)                    / 비공개(5)

함께 꿈꾸는 행복한 고흥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락서비스권리 사용자 매뉴얼

## I. 업무 개요

### □ 개요

○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중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미 수혜자 발굴 및 제공

☞ 대상 : 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발근로자, 차상위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 대상자 제공일시 : 2026. 03. 11(수), 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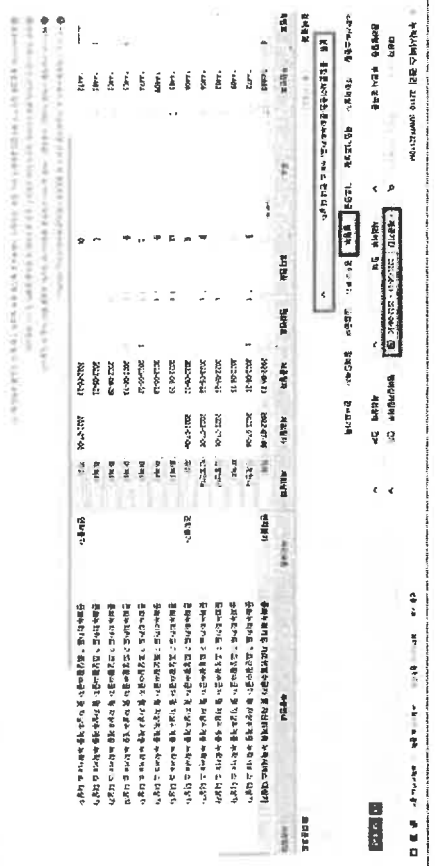
## II. 업무처리 방법

### □ 처리절차



□ 처리방법

[변동·사위] ⇨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 [누락서비스관리] ⇨ [누락서비스관리] ⇨ [발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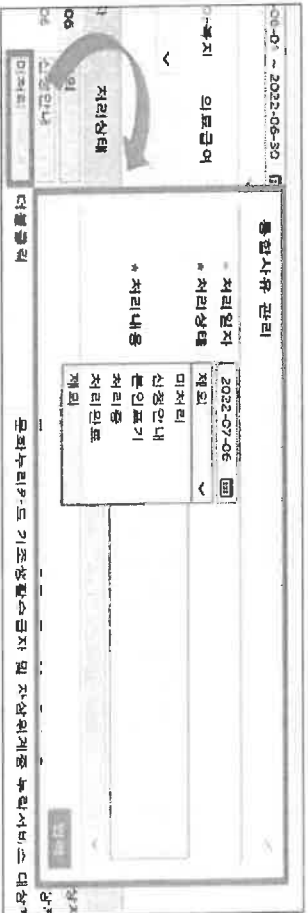
□ 주요메뉴 및 용어설명

<b>이력조회</b>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가능자 조회
<b>다운로드</b>	조회된 목록을 엑셀 다운로드
<b>설정</b>	처리내용 및 제외사유 입력한 내용을 저장
<b>처리여부</b>	처리여부(처리, 미처리)별 대상자 조회
<b>처리상태</b>	처리상태(신청안내, 본인포기, 제외, 처리중, 처리완료)별 대상자 조회
<b>지격및서비스</b>	대상자의 보장자격 및 급여서비스 이력 실시간 조회 가능 * 제공일 이후 카드 발급한 대상자가 조회될 수 있으므로 자격 취득일자 등 확인
<b>이력조회</b>	누락서비스관리 처리 이력 조회
<b>SMS전송</b>	선택한 대상자에게 SMS 전송 * 보장기관별 예산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

1) 대상자 조회

- 누락서비스 관리 분류 선택( **분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안내 대상자 )
  - 발정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안내 대상자
  - 대상자 조회( **이력조회** )
  - 최초생활수급자 및 치상위계층 대상 중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서비스 미수혜자를 조회
  - ※ 제공기간에 [2026-03-11] 포함하여 조회
  - 수혜여부 확인 ( **수혜여부** )
  - 현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서비스 “지원” 중이면 “예” 로 표기됨
- 2) 처리내용 입력
- 조회된 대상자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상태(미처리) 더블클릭하여 팝업 화면에서 처리일자, 처리상태, 처리내용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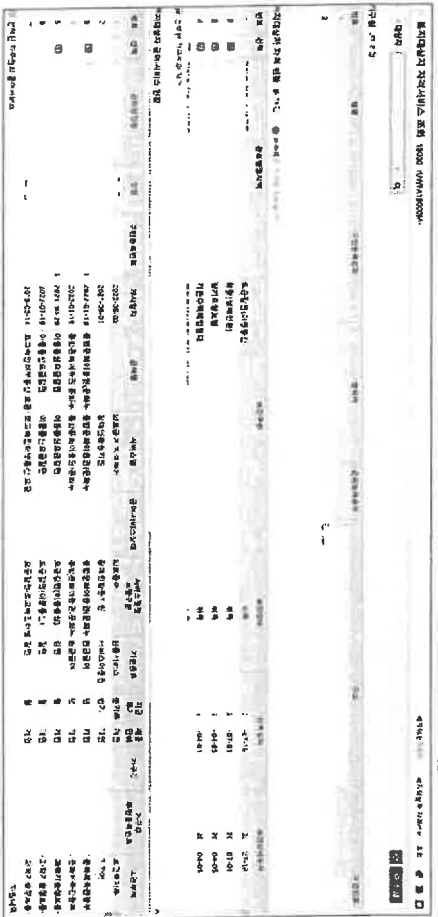


- [이력조회] 클릭하면 대상자 누락서비스 처리 이력 확인 가능



- [가격 및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대상자 가격 서비스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대상자의 보장가격 및 급여서비스 정보 실시간 조회 가능

\* 제공일 이후 카드 발급된 대상자가 조회될 수 있으므로 가격 취득일자 등 확인



## 2-1) 처리내용 설명

- 아래 처리내용에 따라 일주일 이내 정확한 값을 입력

처리내용	설명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누락된 서비스를 안내했을 경우
본인포기	신청내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처리중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를 확정 중인 경우
처리완료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가 지원 완료된 경우
제외	담당자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경우(안내 시 이미 발급한 경우 등)

- ※ 전체 대상자 조회 시 처리여부-전체, 처리상태-전체 설정
- ※ 미처리 대상자 조회 시 처리여부-미처리, 처리상태-전체 설정
- ※ '제외' 처리 대상자만 조회 시 처리여부-처리, 처리상태-제외 설정
- ※ 대상자 '처리완료' 시, 과거 제공 건에 대해서도 일괄 처리 지원

## 3) 액셀 출력

-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목록을 액셀 다운로드

## 4) 업무 참고사항

- ㉔ **본인 지역(시·군·구)단위 문화누리카드 발급예산이 아직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㉕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26.11.30.일까지'이므로 주민센터 내부적으로 협조를 통해 발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㉖ **지지체 정비 : 제공된 대상자를 처리내용에 맞게 입력하여 관리**

\* 처리내용 : 신청안내, 본인포기, 처리중, 처리완료, 제외(필수입력)

※ **처리내용은 2026.6.30(화)까지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총보조사업비<sup>주1)</sup>  순보조사업비<sup>주2)</sup> )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명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단위사업명	예술향유기회 확대
세부사업명	문화예술향유 지원	내역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
상위보조사업명	(보조)통합문화이용권	보조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고흥군)
보조사업자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보조사업 담당자	유라선
총 사업기간	2025-01-01~2026-05-31	당해연도 사업기간	2025-01-01~2026-05-31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sup>주3)</sup>**

(단위: 원)

보조금(㉔)	지자체부담금(㉕)		자기부담금(㉖)	합 계(㉗=㉔+㉕+㉖)	보조금비율 (㉘=㉔/㉗)
	시도	시군구			
592,527,000	74,090,000	185,003,000	0	851,620,000	70%

**3. 보조사업의 목표, 사업수행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사업성과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목표치	실적치	<sup>주3)</sup> 달성률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정부 합동 평가 기준	79.06	93.18	◎

□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명	추진계획일정	추진계획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25-01-01 ~ 2026-03-31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14만 원) 및 지원

□ 세부추진실적

세부과제명	실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25-01-01~2025-12-31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14만 원) 및 지원

## □ 재원조달실적

첨부파일 참조

## 4. 목표 달성·미달성·초과달성의 원인 분석

달성

## 5. 외부 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계획

### 1)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

### 2) 향후 개선계획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목표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초과달성(130% 이상)은 ◎, 달성 ○, 미달성 X로 표기생성됨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sup>주1)</sup>  순보조사업비<sup>주2)</sup> )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명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단위사업명	예술향유기회 확대
세부사업명	문화예술향유 지원	내역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
상위보조사업명	(보조)통합문화이용권	보조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고흥군)
보조사업자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보조사업 담당자	유라선
총 사업기간	2025-01-01~2026-05-31	당해연도 사업기간	2025-01-01~2026-05-31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sup>주3)</sup>**

(단위: 원)

보조금(㉑)	지자체부담금(㉒)		자기부담금(㉓)	합 계(㉔=㉑+㉒+㉓)	보조금비율 (㉕=㉑÷㉔)
	시도	시군구			
592,527,000	74,090,000	185,003,000	0	851,620,000	70%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sup>주3)</sup>**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㉖)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㉗=㉖+㉘)	수익금		
	전기 이월액(㉙)	집행액 (㉚)		발생액 (㉛)	반환액 (㉜)	미반환액 (㉝=㉛-㉜)
715,677,235	0	0	715,677,235	824	824	0

당기분집행잔액 (㉞=㉖-㉛)	전기이월잔액 (㉟=㉙-㉚)	집행잔액 (㊱=㉗+㉘)	발생이자 (㊲)	차기 이월액(㊳)
135,942,765	0	135,942,765	6,595,057	0

반환대상액 (㊴=㉛+㉜+㊲-㉝)	보조금 반환액 <sup>주4)</sup> (㊵)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sup>주4)</sup> (㊶)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㊷=㉗-㉘-㉙)
142,538,646	99,174,223	43,364,423	0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851,620,000	715,677,235	135,942,765	84%
합계		851,620,000	715,677,235	135,942,765	

**【별지 제4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액	사용목적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25년 03월 06일	83,747,629	2025 문화누리카드 이 용대금(2월 1회차)
		2025년 03월 18일	74,036,303	2025 문화누리카드 이 용대금(2월 2회차)
		2025년 03월 27일	52,423,342	2025 문화누리카드 이 용대금(3월 1회차)
		2025년 04월 10일	48,277,151	2025 문화누리카드 이 용대금(3월 2회차)
		2025년 04월 24일	35,429,683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4월 1회차)
		2025년 05월 13일	42,949,222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4월 2회차)
		2025년 05월 28일	49,621,179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5월 1회차)
		2025년 06월 20일	25,575,962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5월 2회차)
		2025년 06월 26일	18,648,410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6월 1회차)
		2025년 07월 10일	17,327,389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6월 2회차)
		2025년 07월 24일	16,528,900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7월 1회차)
		2025년 08월 12일	19,007,032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7월 2회차)
		2025년 08월 28일	14,259,463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8월 1회차)
		2025년 09월 11일	16,098,302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8월 2회차)
		2025년 09월 25일	17,267,650	2025 문화누리카드 이 용대금(8월 2회 차) 지출
		2025년 10월 21일	23,656,740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9월 2회차)
		2025년 10월 28일	13,318,270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10월 1회차)
		2025년 11월 11일	16,589,999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10월 2회차)
2025년 11월 27일	44,768,539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11월 1회차)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25년 12월 09일	24,027,166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11월 2회차)
		2025년 12월 22일	21,531,090	2025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12월 1회 차)
		2026년 01월 20일	33,933,908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12월 2회차)
		2026년 02월 24일	6,653,906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1월 1,2회차)
소계			715,677,235	
합계			715,677,235	

## 【추진실적 및 평가】

### □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명	추진계획일정	추진계획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25-01-01 ~ 2026-03-31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14만 원) 및 지원

### □ 세부추진실적

세부과제명	실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25-01-01 ~ 2025-12-31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14만 원) 및 지원

### □ 재원조달실적

첨부파일 참조

### □ 사업평가

첨부파일 참조

### □ 검증결과

제목	부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검증일자	20260428
검증기관	이정회계법인	검증자	윤지연
검증의견	특이사항 없음		

## □ 보고서 첨부문서

붙임1. 202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정산보고서(전남).pdf

붙임2. 202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정산총괄표(전남).xlsx

붙임3. 2025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통장내역 1.pdf

붙임3. 2025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통장내역 2.pdf

14-02.전라남도문화재단\_2025년 통합문화이용권(카드사업비)\_전라남도 고흥군\_완료.pdf

**전라남도문화재단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_고흥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정 회 계 법 인**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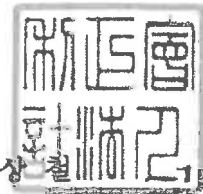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인은 “전라남도문화재단”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_전라남도 고흥군”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전라남도문화재단”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협약예산은 851,620,000원, 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715,677,235원, 집행잔액은 135,942,765원, 발생이자액은 6,595,057원, 수익금반환액은 824원, 불인정금액은 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142,538,646원이고, 국고보조금반환액은 99,174,223원, 지방비부담금반환액(광역)은 12,400,054원, 지방비부담금반환액(기초)은 30,964,369 원입니다.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강상철  
2026년 4월 28일



**【별첨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보조사업명칭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_전라남도 고흥군		
보조사업자	전라남도문화재단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유라선
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회원회, 전라남도, 고흥군		
검증기관	이정회계법인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2026년 2월 28일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a)	지방비부담금(광역) (b)	지방비부담금(기초) (c)	합 계 (d=a+b+c)	보조금비율 (e=a÷d)
592,527,000	74,090,000	185,003,000	851,620,000	69.6%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f)	수익금		
	발생액(g)	반환액(h)	미반환액(i=g-h)
715,677,235	824	824	0

당기분집행잔액 (j=k-l)	발생이자 (k)	반환대상액 (l=m+n)	국고보조금 반환액(o)	지방비부담금 (광역)반환액(p)	지방비부담금(기초) 반환액(q=r-m-n)
135,942,765	6,595,057	142,538,646	99,174,223	12,400,054	30,964,369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검증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검증후 반환대상액	검증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검증후지방비 부담금(광역) 반환액	검증후지방비 부담금(기초) 반환액
135,942,765	6,595,057	824	0	142,538,646	99,174,223	12,400,054	30,964,369

**5. 검증의견**

특이사항 없음
---------

**【별첨2】 불인정금액 내역**

(단위: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불인정사유
		해당사항 없음			

**【별첨3】 자원별 반환액**

(단위: 원)

자원	집행잔액	불인정액	발생이자(e나라도움)	수익금(*)	반환액
국고보조금	94,584,150	0	4,589,500	573	99,174,223
지방비부담금(광역)	11,826,872	0	573,110	72	12,400,054
지방비부담금(기초)	29,531,743	0	1,432,447	179	30,964,369
소계	135,942,765	0	6,595,057	824	142,538,646

(\*) 보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부담금(광역 및 기초) 예산액 비율로 안분함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 고 흥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 통합문화이용권 「찾아가는 설명회」 담당자 참석 안내

1. 관련: 문화체육과-7585(2026. 3. 31.)

2.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2026. 4. 3.(금)까지 참석자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2026. 4. 7.(화) 14:30 ~ 16:30

나. 장 소: 고흥문화회관 세미나실(2층)

다. 대 상: 읍·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담당자

라. 주요내용: 이용(발급)률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재단 기획사업 안내 등

마. 기타사항: 상시학습 2시간 인정

□ 참석자 명단

읍·면	직급	이름	비고

끝.

# 고 흥 군 수

수신자 고흥읍장, 도양읍장, 풍양면장, 도덕면장, 금산면장, 도화면장, 포두면장, 봉래면장, 동일면장, 점암면장, 영남면장, 괴역면장, 남양면장, 동강면장, 대서면장, 두원면장

주무관 김범규 문화예술팀장 김윤희 문화체육과장 전결 2026. 4. 1. 조봉근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과-7632

접수

우 59542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http://www.goheung.go.kr>

전화번호 061-830-6715

팩스번호 061-830-5548

/ [kg909@korea.kr](mailto:kg909@korea.kr)

/ 대한민국 공개

함께 꿈꾸는 행복한 고흥

국정 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 약속	3-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정 과제	3-11-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표명	㊦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지표 성격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 국고보조사업 : 17개 시·도 국고보조(24년 335,400백만원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국가주요시책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문화향유 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지표 유형	정량	공통	정순	계속(변경)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대비 이용금액 비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전체 이용건수 대비 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건수 비율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평가목적	◦국고보조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측정																																																																																						
	기대효과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기타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측정 방법	○ 산식 -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 ① 사업 예산 집행률(70%)+② 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률(30%) ○ 산식 설명 : ① 사업 예산 집행률(70%) : 각 시도에 배정된 사업예산 대비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 $\text{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 \frac{\text{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원)}}{\text{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액(원)}} \times 100$ - 목표치 : 시부 84, 도부 84 · 지자체별 전체발급대상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25년 연초 사회보장정보원 통계 기준)을 고려, 목표치의 5% 내에서 하향조정 예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성과 목표 (a)</th> <th>60대 이상 비중</th> <th>조정 (b)</th> <th>최종 목표치 (a)+(b)</th> <th>구분</th> <th>성과 목표 (a)</th> <th>60대 이상 비중</th> <th>조정 (b)</th> <th>최종 목표치 (a)+(b)</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 rowspan="8">84</td> <td></td> <td></td> <td></td> <td>경기</td> <td rowspan="8">84</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산</td> <td></td> <td></td> <td></td> <td>강원</td> <td></td> <td></td> <td></td> </tr> <tr> <td>대구</td> <td></td> <td></td> <td></td> <td>충북</td> <td></td> <td></td> <td></td> </tr> <tr> <td>인천</td> <td></td> <td></td> <td></td> <td>충남</td> <td></td> <td></td> <td></td> </tr> <tr> <td>광주</td> <td></td> <td></td> <td></td> <td>전북</td> <td></td> <td></td> <td></td> </tr> <tr> <td>대전</td> <td></td> <td></td> <td></td> <td>전남</td> <td></td> <td></td> <td></td> </tr> <tr> <td>울산</td> <td></td> <td></td> <td></td> <td>경북</td> <td></td> <td></td> <td></td> </tr> <tr> <td>세종</td> <td></td> <td></td> <td></td> <td>경남</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제주</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성과 목표 (a)	60대 이상 비중	조정 (b)	최종 목표치 (a)+(b)	구분	성과 목표 (a)	60대 이상 비중	조정 (b)	최종 목표치 (a)+(b)	서울	84				경기	84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전				전남				울산				경북				세종				경남								제주					
구분	성과 목표 (a)	60대 이상 비중	조정 (b)	최종 목표치 (a)+(b)	구분	성과 목표 (a)	60대 이상 비중	조정 (b)	최종 목표치 (a)+(b)																																																																															
서울	84				경기	84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전					전남																																																																																			
울산					경북																																																																																			
세종					경남																																																																																			
				제주																																																																																				

② 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률(30%) : 각 시도별 전체 이용건수 대비 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건수

$$\text{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률(\%)} = \frac{\text{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건수(결제건수)}}{\text{전체 이용건수(결제건수)}} \times 100$$

\* 문화예술체험분야 : '2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소분류 상 공연 전시, 문화체험 분야 이용건수(결제건수)의 비중

- 목표치 : 지자체별 3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
- 광역지자체 관할 기초지자체의 50% 이상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89개)일 경우, 지자체 3년 평균값 유지

구분	지자체 3년 평균 ≥ 1.51(전국 3년 평균)	1.0 ≤ 지자체 3년 평균 < 1.51 (전국 3년 평균)	지자체 3년 평균 < 1.0	인구감소지역
목표	지자체 3년 평균값의 3% 확대	지자체 3년 평균값의 5% 확대	지자체 3년 평균값의 7% 확대	지자체 3년 평균값 유지
해당 지자체	5개 시도 (서울, 광주, 울산, 세종, 제주)	2개 시도 (인천, 경기)	3개 시도 (부산, 대구, 대전)	7개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구분	3년 ('21~'23) 평균	목표부여	최종 목표치	구분	3년 ('21~'23) 평균	목표부여	최종 목표치
서울	1.65	3% 증가	1.70	경기	1.49	5% 증가	1.56
부산	0.83	7% 증가	0.89	강원	1.65	유지	1.65
대구	0.79	7% 증가	0.85	충북	2.00	유지	2.00
인천	1.34	5% 증가	1.40	충남	0.95	유지	0.95
광주	1.73	3% 증가	1.79	전북	1.93	유지	1.93
대전	0.85	7% 증가	0.91	전남	1.72	유지	1.72
울산	1.67	3% 증가	1.71	경북	2.86	유지	2.86
세종	2.40	3% 증가	2.48	경남	1.26	유지	1.26
				제주	2.13	3% 증가	2.20

- 목표치 : 90점 이상
- 평가대상 : 광역지자체
- 평가기준일 : 2025. 12. 31.

○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단위: 원, %)

시스템 구현 서식

구분	①사업예산집행률			②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률			달성값 (C)+(F)
	목표 (A)	실적 (B)	달성률(C) (B/A×70) *최대값 ≤ 70	목표 (D)	실적 (E)	달성률(F) (E/D×30) *최대값 ≤ 30	
시·도 (시군구 합계)							

연계 시스템

정보시스템운영부서				연계항목	
정보시스템명칭	기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이름	증빙화면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누리팀	이승남	061-900-2274	문화누리카드 예산집행률	매뉴얼하단 별첨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하여 부처 자체 확인)

VPS실적 입력주체

중앙부처

입력 시기

년(2026년 1월)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김정윤 주무관 ☎ : 044-203-2519 E-mail : jeongyun74@korea.kr

국정 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추진 전략	4-20.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 과제	4-20-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지표명	라.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지표 성격	<p style="text-align: center;">&lt;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사업 : 17개 시·도 국고보조(25년 374,452백만원 보조/국비 70%, 지방비 30%)</li> <li>- 국가주요시책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문화향유 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li> </ul>									
지표 유형	정량	공통	정순	계속(유지)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 목표율 대비 실제 집행률</li> <li>○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 목표율 대비 실제 이용률</li> </ul>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평가목적	○ 국고보조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측정								
	기대효과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기타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측정 방법	<p>○ 산식</p> <p>-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 ① 사업 예산 집행률 점수(70점)+② 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률 점수(30점)</p> <p>○ 산식 설명 :</p> <p>① 사업 예산 집행률 점수(70점) = 각 시도별 문화누리카드 예산 (실제 집행률/ 집행 목표율) x 70</p> <p>1) 시도별 집행 목표율(%) : 기본 목표율(시부 83.5, 도부 81.5)에서 지자체별 전체발급대상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25년 연초 사회보장정보원 통계 기준)을 고려, 5% 내에서 하향조정</p>									
	구분	지자체 60대 이상 비중 < 51.4(전국 평균)	지자체 60대 이상 비중 ≥ 51.4(전국 평균)	지자체 전체 지원대상자 수 ≥ 20만명 & 지자체 60대 이상 비중 ≥ 51.4(전국 평균)						
	목표	기본 목표율 대비 2% 하향조정	기본 목표율 대비 3% 하향조정	기본 목표율 대비 4% 하향조정						
	해당 지자체	7개 시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6개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4개 시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구분	성과 목표 (a)	60대 이상 비중	조정 (b)	최종 목표치 (a)+(b)	구분	성과 목표 (a)	60대 이상 비중	조정 (b)	최종 목표치 (a)+(b)
	서울	83.5	54.9	4% 감소	80.16	경기	81.5	51.5	4% 감소	78.24
	부산		56.6	4% 감소	80.16	강원		57.9	3% 감소	79.06
	대구		51.3	2% 감소	81.83	충북		52.8	3% 감소	79.06
	인천		49.5	2% 감소	81.83	충남		54.0	3% 감소	79.06
	광주		42.4	2% 감소	81.83	전북		52.3	3% 감소	79.06
대전	47.7		2% 감소	81.83	전남	57.9		3% 감소	79.06	
울산	49.4		2% 감소	81.83	경북	56.1		3% 감소	79.06	
세종	43.7		2% 감소	81.83	경남	51.8		4% 감소	78.24	
						제주		43.4	2% 감소	79.87

$$2) \text{ 실제 집행률(\%)} = \frac{\text{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원)}}{\text{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액(원)}} \times 100$$

② 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률 점수(30점) : 각 시도별 문화예술체험분야 (실제 이용률/이용 목표율) x 30

1) 시도별 이용 목표율(\%) : 지자체별 5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

- 광역지자체 관할 기초지자체의 50% 이상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89개)일 경우, 지자체 5년 평균값 유지

구분	지자체 5년 평균 ≥ 1.7(전국 5년 평균)	지자체 5년 평균 < 1.7(전국 5년 평균)	인구감소지역
목표	지자체 5년 평균값 유지	지자체 5년 평균값의 2% 확대	지자체 5년 평균값의 3% 하향조정
해당 지자체	5개 시도 (서울, 광주, 울산, 세종, 제주)	5개 시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7개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구분	5년 ('20~24) 평균	목표부여	최종 목표치	구분	5년 ('20~24) 평균	목표부여	최종 목표치
서울	1.73	유지	1.73	경기	1.51	2% 증가	1.54
부산	1.08	2% 증가	1.10	강원	1.73	3% 감소	1.68
대구	0.82	2% 증가	0.84	충북	2.44	3% 감소	2.37
인천	1.63	2% 증가	1.66	충남	1.24	3% 감소	1.20
광주	1.85	유지	1.85	전북	2.09	3% 감소	2.03
대전	1.09	2% 증가	1.11	전남	1.76	3% 감소	1.71
울산	1.79	유지	1.79	경북	2.77	3% 감소	2.69
세종	2.11	유지	2.11	경남	1.30	3% 감소	1.26
				제주	1.99	유지	1.99

$$2) \text{ 실제 이용률(\%)} = \frac{\text{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건수(결제건수)}}{\text{전체 이용건수(결제건수)}} \times 100$$

\* 문화예술체험분야 : '2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소분류 상 공연, 전시, 문화체험 분야 이용건수(결제건수)의 비중

- 목표치 : 90점 이상
- 평가대상 : 광역지자체
- 평가기준일 : 2026. 12. 31.

○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단위: %, 점)

시스템 구현 서식

구분	①사업예산 집행률 점수			②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률 점수			최종 달성값 (C)+(F)
	집행 목표율 (A)	실제 집행률 (B)	달성값(C) (B/A×70) *최대값 ≤ 70	이용 목표율 (D)	실제 이용률 (E)	달성값(F) (E/D×30) *최대값 ≤ 30	
시도 (시군구 합계)							

※  : 직접 입력 /  : 자동계산

연계 시스템	정보시스템운영부서				연계항목	
	정보시스템명칭	기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이름	증빙화면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한국문화예술회원회 / 문화누리팀	이승남	061-900-2274	문화누리카드 예산집행률, 문화체험분야 이용률	매뉴얼하단 별첨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하여 부처 자체 확인)					
VFS실적 입력주체	중앙부처	입력 주기	년	입력 시기	정상입력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정보배 주무관☎ : 044-203-2519 E-mail : sbb712@korea.kr					

**\*연계항목 증빙화면**

로그인 완료 시간 59:15      문화체육관광부 김정윤님 로그인 하였습니다.      정보부서      로그인

mnuri.kr/admin/NTVS/index.jsp

사입안내      카드발급/접수/공카드      실적관리      알림방

메뉴목록      통계자료

발급 실적

발급 실적      이용 실적      끝낼 청구내역      끝낼 청구 상세내역      실적보고서      카드발급-사분별현황      가맹점 결제 이력      권역 미사용자 현황

**이용 실적**      문자발송      실시간 카드 정보 조회      ★ 즐겨찾기      닫기

사입년도 2024년      카드종류 전체      날짜 2024-06-03 월      검색

지역검색 전체      전체      전체       17개 시도만 (전체검색에 한함)

대상 유형(기초/차상위)      연령대별      은/오프라인      (구)가맹점 구분별      (신)가맹점 구분별      역설다운

\* 실적자료는 전일까지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사입년도	지역구분			사업예산 (A)	발급매수 (B)	발급매수 (남)	발급매수 (여)	예산대비 발급률 (B/A*100)	발급금액 (C)
	광역	기초	주민센터↑						
2024	서울			55,516,890,000	395,727	179,910	215,817	92.66	51,444,510
2024	부산			30,020,770,000	224,218	97,247	126,971	97.09	29,148,341
2024	대구			19,898,710,000	147,387	62,866	84,521	96.29	19,160,311
2024	인천			21,996,520,000	164,971	70,891	94,080	97.5	21,446,231
2024	광주			12,326,860,000	89,301	38,696	50,405	94.18	11,609,131
2024	대전			10,216,700,000	74,960	32,959	42,001	95.38	9,744,801
2024	충청			5,783,180,000	42,230	18,281	23,949	94.93	5,489,901
2024	세종			1,091,220,000	8,208	3,584	4,624	97.78	1,067,041
2024	경기			61,095,190,000	462,997	201,526	261,411	98.5	60,181,811
2024	충북			10,691,200,000	80,581	34,068	46,513	97.98	10,475,531
2024	충남			12,573,860,000	90,932	38,459	52,473	94.01	11,821,161
합계				335,400,000,000	2,458,997	1,065,744	1,393,253	95.31	319,669,611

17건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2025.09.15

분야별	건명	권고사항	처리결과	비고							
세출	세출결산 누락  ○ '25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 대상자: 도내 2년이상 거주하는 19~28세 청년 - 사업량: 2,272명 - 사업비: 568,000천원 - 실집행: 343,964천원 (1,652명 지원) - 결산결과 (단위:천원) <table border="1" data-bbox="810 952 911 1554"> <thead> <tr> <th>예산액</th> <th>예산현액</th> <th>지출액</th> <th>이월액/보조금반납액/집행잔액</th> </tr> </thead> <tbody> <tr> <td>568,000</td> <td>568,000</td> <td>568,000</td> <td>0</td> </tr> </tbody> </table> ※ 예산현액에서 집행행액을 차감한 잔액 224,036천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함. ※ 정보에 취약한 대상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결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철저한 결산을 요함.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보조금반납액/집행잔액	568,000	568,000	568,000	0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남 도와 고흥군, 농협은행 3자 업무협약 체결하여 업무 추진중이며, 농협은행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해당연도에 보조금 집행 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의거 보조금 집행기간이 종료된 익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받고 있음. ※ 불암: 2025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정산결과 및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 발송 현황 1부. ○ 정보에 취약한 대상자들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겠음.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보조금반납액/집행잔액								
568,000	568,000	568,000	0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기획실장: 최 남 규

최남규

분야별	건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세출	성과보고서의 지표 설정 및 목표값 설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사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지표보다는 지표의 목표값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있음. 향후 지표 선정에 있어 정책사업목표에 연계성 및 객관성이 담보할 수 있는 지표 선정이 요구됨</li> <li>- “초과달성” 지표의 경우 매년 목표값이 동일하거나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도전적인 목표값 설계가 요구됨</li> <li>- 새롭게 개발된 지표의 성과달성도 모 두 “달성”,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값보다는 노력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값 설계가 요구됨</li> <li>- 매년 결산서 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차기연도 성과계획서에 피드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권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부서별 성과지표 적정성 및 목표설정 기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음</li> <li>-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신규 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 조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실적 추이와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독려하겠음</li> <li>- 아울러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과정에서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및 검토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음</li> <li>-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달성도에 대한 점검·분석 내용을 추가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음</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 정국균



분야별	진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세출	성과보고서 지표선정의 문제점	<p>- 성과계획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성과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나 또는 노력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성과 지표로 설정해서는 안될 것임.</p> <p>1. 재무과</p> <p>- 지방세 징수율과 세외수입 징수율의 경우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율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율을 성철하고 성과를 측정하여야 할것임.</p>	<p>◦ 지방세 징수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현년도에 부과에 대해 자진납부 유도 및 징수업무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성과 지표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자연 증가분이 아닌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실적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여 성과 평가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p>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분야별	건명	권고사항	처리결과	비고
세출	성과보고서 지표선정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어·귀향·귀촌 15,000 달성의 경우 전임인구를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전임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해 부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의 인과관계가 없고 전출인구도 있는데 전임인구만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모순임</li> <li>○ 투입과 결과(산출)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연도 성과지표 설정 시 출생·사망(자연 요인) 전입·전출(사회 요인)에 준하여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겠음.</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관광정책실장 김 동 현



분야별	진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세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일치로 신뢰성 있는 성과 관리체계 마련</li> <li>- 성과보고서 사업목표가 성과 미달성 또는 초과달성한 경우 목표값의 합리성에 증점을 두고 실적을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는 목표값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목표값을 일치하도록 관리하고</li> <li>- 성과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목표값을 설정하겠음.</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기획실장: 최 남 규

2025. 12. 10

분야별	건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세출	세출예산 이월액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연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설명됨</li> <li>- 이월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지표로서, 비율이 낮을수록 효율적으로 평가됨</li> <li>-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균형있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권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일정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집행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음</li> <li>-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하여 연내 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li> <li>- 아울러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최근 집행실적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음</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기획실장 최 남 규

2025. 11. 27

분야별	건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기금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사용 비율이 10% 미만인 기금이 8개로, 기금사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li> <li>- 기금별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존속기한 연장 논의 시 일몰제 적용과 연장심사 엄격히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거나 성과미흡·중복적인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li> <li>- 존속기한 연장 검토 시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운용 실적 및 존치의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인구정책실장 승 민 철 **승원**

분야별	건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기금	기금조성세부명세서 작성의 오류 및 이월금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 결산서, 기금총괄표, 예금잔고 증명서 상의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6,223,791,406으로 모두 일치하나,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상에는 예치금 잔액이 사고이월액 249,500,000원을 제외한 5,794,291,406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일치함.</li> <li>○ 사고이월액도 지출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금 잔고에 포함되어 표시되어야 하고 이월금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li> <li>○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지방기금법 제12조) 다만, 당해연도에 지출된 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사고이월)은 기금이월시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이월액이 예치금 잔고에 포함되지 않아 결산서 간 금액 차이가 발생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잔액 표출 방식에 의한 것으로, 향후 기금 결산자료 작성 시 사고이월액 및 이월금 표시 방법을 보다 명확히 검토하여 결산서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li> <li>○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약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여 당해 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분야별	건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기금	기금조성세부명세서 작성의 오류 및 이월금의 처리	<p>○ 사고이월은 “고흥군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용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5.12.29.에 용역업체와 협상합의를 한 것으로 당해연도의 종료일 전 2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2026년도에 합의를 작성 하였으면 사고 이월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p>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분야별	건명	권고사항	처리결과	비고
기금	세입 및 세출 불일치 (지방소멸대응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수납 및 정산을 인구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사업의 집행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짐. 인구정책실에서는 세입 결산 시 인구정책실에서 집행할 금액(예산) 30억만 세입 결산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계상하고 고홍균 전 부서에 배정할 금액 전체 160억원을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으로 계상함.</li> <li>○ 이렇게 계상함으로써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시되고, 세출결산서에서는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계상된 금액이 0원인데 지출액이 발생되어 결산서의 왜곡이 생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미배분 기금요청 시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결정, 수납을 하도록 조치하여 결산서 상 세입 및 세출 간 오류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분야별	건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기금	세입 및 세출 불일치 (지방소멸대응기금)	<p>○ 반대로 스마트팜사업소의 경우에는 세입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0원인데 세출결산서에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33억이 계상되고 사업이 실행되어 지출이 발생됨. 결과적으로 세입(수납액)이 없는데 사업이 실행되어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됨.</p> <p>○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인구조정책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무만 총괄하는 형식이므로, 해당 실과에 배분된(청구한) 금액은 해당 실과에서 세입 및 세출 결산서에 계상하면 상기의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됨.</p>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 *(인)*

분야별	건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기금	세입 및 세출 불일치 (지방소멸대응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인구조정책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무만 총괄하는 형식이므로 해당 실과에 배분된 (청구한) 금액은 해당 실과에서 세입 및 세출 결산서에 계상할 것을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요청 시, 사업부서(스마트팜사업소)에서 배분액에 대한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후 총괄부서(인구조정책실) 통해 한국재정경제원에 배분액 납부 요청코자 함.</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기획실장 최 남 규

김민규

분야별	건 명	권 고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기금	기금 요구불예금 관리 철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에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을 직접 예치하고, 예치기간, 금리 등을 직접 관리함에 따라 동일 금고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금리가 각각 상이</li> <li>-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특히 보통예금은 당해연도 사용액에 맞게 최소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금리 상품을 도입하여 이자수의 극대화 할 필요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 간 예치 현황 및 금리 정보 등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li> <li>- 보통예금의 적정 규모 유지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 활용 등 이자수의 증대 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실단과소장 : 정국균

분야별	건명	권고사항	처리결과	비고																
재무결산	e호조 결산 시스템 오류 정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e호조시스템의 자산 COA 세분화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산표 계정과 실제 자산금액 간 매칭 오류가 발생함.</li> <li>- 그 결과 자산대비 차이보정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고,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전기 오류수정이익이 재무결산에 반영됨.</li> <li>- 이에 따라 2025년 재정상태표상 자산총계가 6조4,087억원으로 과대 계상 되었음.</li> <li>- 다만, 재정상태표 상기 오류는 결산 검사 기간동안 바로잡아 수정하였음.</li> <li>- 재무결산 업무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향후에도 외부전문가 용역 결과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ul>	<p>- 결산 검사기간에 재무제표 검토 용역 수행기관인 신승회계법인의 재검토를 통해 자산 COA 세분화 기준 미반영에 따른 계정 매칭 오류로 전기 오류수정이익이 과대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오류를 정정·반영함.</p> <p>(단위: 억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수정 전</th> <th>수정 후</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자산</td> <td>64,087</td> <td>39,820</td> <td>△24,267</td> </tr> <tr> <td>부채</td> <td>352</td> <td>352</td> <td>-</td> </tr> <tr> <td>순자산</td> <td>63,735</td> <td>39,468</td> <td>△24,267</td> </tr> </tbody> </table>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증감	자산	64,087	39,820	△24,267	부채	352	352	-	순자산	63,735	39,468	△24,267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증감																	
자산	64,087	39,820	△24,267																	
부채	352	352	-																	
순자산	63,735	39,468	△24,267																	